

#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923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3. 21. 허옥희 의원 등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5. 3. 2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5. 4. 9.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최두임 의원)

#### 가. 제안이유

- 고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나. 주요내용

- 1) 보험 가입 및 선정(안 제3조)
- 2) 보험 가입 공고(안 제6조)
- 3)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안 제7조 및 제8조)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14호
  - 예고기간: 2025. 3. 21.(금) ~ 2025. 3. 27.(목) [6일간]
  -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장혜정)

○ 고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

- 보험가입 및 선정(안 제3조)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영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 보장기준, 보험료 납부 및 가입 공고(안 제4조~제6조)

◦ 보험의 보장기준과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하였음.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안 제7조~제8조)

◦ 보험금 청구 방법과 보험금 지급 예외사유를 규정하였음.

○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현재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로 분류되어 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보도가 없는 도로나 교통 환경에 따라 다양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전동보조기기 운행자와 피해를 입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4. 9.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